

[보도자료]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개정방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q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박 선 영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02, 이메일: sypark@kwdi.re.kr)

◇ 헌법상의 성평등, 가족관련조항은 21세기 시대정신과 새로운 여성상, 가족상 등을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지난 12월에 발간한 보고서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헌법의 성평등, 가족관련조항은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성평등관, 여성관, 가족관 등이 21세기의 시대정신과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의 성평등관련조항은 형식적 평등관에 입각해있고, 여성을 보호와 평등의 대상으로 보는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정방향으로 "남녀는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평등권(제11조) 조항에 독립항으로 추가하고 "국가는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성평등의 실현을 국가목표규정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계속해서 우리 헌법의 가족관련조항은 가족의 다양화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동의 권리보장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이 혼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